

# 제111조 사업자등록



## 제111조의 요약

- 신규 사업개시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 부가가치세법 규정 준용됨(세무서장은 7일내 교부 통지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하거나 본 법 제109조의 법인설립신고한 경우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봄.
-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함.



## ● 제111조 [사업자등록]

-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I. 본 조의 개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본 조 규정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

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규정은 본 법 규정상의 등록에 그대로 준용한다.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 신청이 되어야 세무상 파악이 되므로 등록신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신고가 되었다고 다른 장소의 사업장설치라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II. 사업자등록

### 1. 신규사업자등록 (법 제111조제1항)

#### 1) 사업자등록의무자의 범위

##### ① 납세의무 있는 법인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대상이며, 각 지점이나 사업장도 등록대상이다.

##### ② 납세번호 고유번호 부여 (시행령 제154조제3항)

모든 사업상의 거래를 위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는 납세번호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

일반개인의 경우 납세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이며 사업자등록한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도 거래관계상 계산서나 지급명세서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서류에의 기재를 위해 무언가 번호가 필요하다.

다음 시행령은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납세고유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009. 2. 4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2) 사업자등록의 유형 (법 제111조제2항·제4항)**

**(1) 법인세법상의 등록**

① **사업개시일에서 20일내 신청서 제출**

신규사업법인,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보므로 부가서류는 불필요하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인설립신고의 등록신청 간주**

본 법 제109조는 법인을 신규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신고하면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등록신청이 필요없고 관

런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실상의 대표자 기재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교부되는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공동대표 등과 같이 대표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로登記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상 등록규정의 준용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위의 시행령에서 보듯이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므로, 본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면세사업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법 제111조제2항)

### 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 본조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일반자연인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재화와 용역공급에 관한 제반법적 규정을 자세히 엄격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은 본 법의 등록으로 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현실적으로 95% 이상의 대부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다.

### ② 사업자 등록절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

자등록은 통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지만 필요한 경우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시는 법인설립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계획서 혹은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은 부가가치세법의 해설에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만을 다음과 같이 계기한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 1 개정)
-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2. 사업자등록절차 (법 제111조제3항)

###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절차방법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교부하는데 신청내용 등이 불비되면 교부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제3항).

이밖에 사업을 개시하였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다음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형장소외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008. 2. 29 개정)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09. 2. 4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⑤ 법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개정)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2011. 6. 23 단서신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III. 사업자등록 · 정정 · 말소

#### 1. 사업자등록증 정정

##### ①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상거래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기타의 세금을 정확히 과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제반사업상황과 인적사항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며, 이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정되어야 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때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 제 (2000. 12. 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008. 2. 29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9. 2. 4 개정)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목이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97. 12. 31 신설)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2002. 10. 28 신설)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2009. 2. 4 개정)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2009. 2. 4 신설)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2009. 2. 4 신설)
  12.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2010. 10. 1 개정)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2010. 2. 18 개정)
  2. 그 밖의 경우 : 신청일 당일 (2010. 2. 18 개정)

## ② 정정사유의 무신고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관련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 2. 유·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말소

### ① 휴업·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말소

법인이 휴업하거나 폐업 및 등록후에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이 유지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③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010. 2. 18 신설)

② 세무서장의 직권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은 실제사업을 행하고 있는자들을 등록하고 현황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이 거래상대방들과의 재화용역거래에서 신뢰성의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등록이나 실제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등록이 불필요하다. 즉,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소나 취소시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이때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다.